

부 의 안

제 69 회 이 사 회			
년 월 일	2015. 3. 17.	의안번호	제 337 호
의 제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회계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심의·의결		
구 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의 결 사 항	<input type="checkbox"/> 보 고 사 항	

1. 제 안 자: 경영기획실장

2. 주 문: 원안대로 의결한다

3. 제안사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개정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순화함.

4. 의결사항: 주문과 같음

5. 참고사항

- 「지방재정법」 개정(2014. 11. 29. 시행)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회계규정 일부 개정규정 (안)

의안 번호	제337호
----------	-------

제출년월일 : 2015. 3. 17.

제 출 자 : 경영기획실장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개정

2. 주요내용

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의거하여 띄어쓰기, 법령 표시 방법 등 변경

나. 경리관 → 재무관, 기타 → 그 밖에(그 밖의)

3. 참고사항

「지방재정법」 (2014. 11. 29. 시행)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회계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회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은 지방공기업법(이하 “공기업법” 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 의거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 을 “규정은 「지방공기업법」 과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으로, “운영절차와 적정한 회계절차” 를 “운영 절차와 적정한 회계 절차” 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공단” 을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 으로, “법령에” 를 “법령에서” 로, “이규정이” 를 “이 규정에서” 로, “의한다” 를 “따른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무회계처리는 「보육시설 재무 회계규칙」 ” 을 “재무회계처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 으로,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사업지침” 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지침」 ” 으로 한다.

제3조 중 “의한다” 를 “따른다” 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의한” 을 “따른” 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기타” 를 “그 밖” 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물품 기타자산” 을 “물품, 그 밖의 자산”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 을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항 제1호” 를 “제1항제1호” 로, “3호” 를 “제3호” 로 한다.

제9조 중 “법령이” 를 “법령에서” 로, “의함” 을 “따름” 으로 한다.

제10조 중 “복사는 문서규정이” 를 “복사는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문서규정」 에서” 로, “준한다” 를 “따른다” 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법령 기타 관계규정의” 를 “법령, 그 밖에 관계규정에서”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이” 를 “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에서” 로, “의한다” 를 “따른다” 로 한다.

제12조 중 “의하여” 를 “따라” 로 한다.

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계정과목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이하 “결산지침” 이라 한다) 및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 중 “제” 를 “모든” 으로 하고, 제3호 중 “의한다” 를 “따른다” 로, “당 기업주의에 의거” 를 “당기업적주의에 따라” 로 하며, 제4호 중 “의한다” 를 “따른다” 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1주일이내(근무일 기준)으로” 를 “1주일 이내(근무일 기준)로” 하고, 제2항 중 “①항” 을 “제1항” 으로, “경리관의 승인후 공단 회계규정시행내규에 근거하여” 를 “재무관의 승인후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 관리공단 회계규정 시행내규」(이하 “내규” 라 한다)에 따라” 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외하여” 를 “제외해”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 를 “따라” 로, “상계함으로서” 를 “상계함으로써” 로, “제외하여” 를 “제외해” 로 한다.

제17조 중 “법인세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를 “경우에는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재해 및 기타의 임시 손실)” 을 “(재해 및 그 밖의 임시 손실)” 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기타” 를 “그 밖” 으로 하며, 같은 조 단서 중 “기타” 를 “그 밖” 으로, “5이상인” 을 “5 이상인” 으로, “5년이내” 를 “5년 이내” 로 한다.

제19조 중 “지점(사업소)상호간” 을 “지점(사업소) 상호간” 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타” 를 “그 밖”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본문 중 “영업외수익” 을 “영업외 수익” 으로 한다.

제23조 중 “증빙서” 를 각각 “증명서” 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한장의 전표는 한 계정과목에 대하여서” 를 “한 장의 전표에는 한 계정과목을” 로 한다.

제25조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 를 “따라” 로, “각호” 를 “각 호” 로, “불비” 를 “미비” 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불미” 를 “미비” 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대차구분을 요하는 때” 를 “대차구분이 필요한 경우”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야” 를 “따라야”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이외의 기입을 하여” 를 “이외에 기입을 해” 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계정원장 기타” 를 “계정원장, 그 밖의” 로 한다.

제31조 본문 중 “잔액은 다음연도 1월1일부” 를 “모든 잔액은 다음연도 1월 1일부” 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신·구” 를 “신구” 로 한다.

제2장제4절의 제목 “증빙서” 를 “증명서” 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증빙서류의 범위)” 를 “(증명서류의 범위)” 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증빙서류” 를 “증명서류” 로 하며, 같은 조 단서 중 “의하기” 를 “따르기” 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증빙서류 생략)” 을 “(증명서류 생략)” 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계산적조작의 필요에 의하여” 를 “계산적 조작의 필요에 따라” 로, “전표로서 증빙서류” 를 “전표로써 증명서류” 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증빙서류의 작성)” 을 “(증명서류의 작성)” 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증빙서류” 를 “증명서류” 로, “의하여” 를 “따라” 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나목 중 “적요란” 을 “적요란” 으로, “명기하여야” 를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영수증서는 정당한 채권자가 지출결의서의 영수란에 기명 날인하거나 합계 금액의 정정이 없는 별지 영수증서(입금표 포함)에 기명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3. 청구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하며, 그 명세는 계약서 등 다른 관계 서류의 명세와 일치하여야 한다.

제35조제4호나목 중 “부합되어야” 를 “일치되어야” 로 한다.

제35조제5호 중 “기타 증빙서류” 를 “그 밖의 증명서류” 로 하고 같은 호 가 목 중 “증빙서류를” 을 “증명서류를” 로, 나목 중 “기타 증빙서류의” 를 “그 밖에 증명서류의” 로 한다.

제40조 단서 중 “예산총칙이” 를 “예산총칙에서” 로 한다.

제41조 중 “예산관리자는 예산편성지침을 기준으로” 를 “예산관리자는 「지방 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및 구청장이 정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의거” 를 “따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후 조례가” 를 “후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로 한다.

제43조 중 “예산편성지침이” 를 “예산편성지침에서” 로, “의한다” 를 “따 른다” 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의한” 을 “따른” 으로, “관리자에게 부문별 예산을” 을 “관리자에게” 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예산총칙이” 를 “예산총칙에서” 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변경 할” 을 “변경할” 로, “편 성 할” 을 “편성할” 로 한다.

제48조의 제목 “(예산 불성립시의 예산집행)” 을 “(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집 행)”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 를 “각 호” 로, “실적범위 내” 를 “실적범위”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 를 “따 라” 로, “의여” 를 “따라” 로 한다.

제54조제2항 중 “전항” 을 “제1항” 으로, “계약체결일자로부터” 를 “계약 체결일자부터”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요하는” 을 “필요로 하는” 으로 한다.

제55조제2항 중 “전항” 을 “제1항” 으로, “2개업체” 를 “2개 업체” 로 한 다.

제56조 중 “계약심사결과” 를 “계약심사 결과” 로 한다.

제57조 중 “내규로” 를 “내규에서” 로,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으로 한다.

제58조제2항 중 “기타” 를 “그 밖의” 로, “제증” 을 “모든 증” 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중 “가지급” 을 “가지급금”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가지급” 을 “가지급금” 으로, “못한” 을 “못하였을”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아니한” 을 “아니하였을” 로 한다.

제64조제1항 단서 중 “행할” 을 “할” 로 한다.

제65조 중 “행한다” 를 “한다” 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의하여야” 를 “따라야” 로, “발부하여야” 를 “발급하여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지” 를 “따르지” 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그 밖에 관계법령 및 계약 등에 따른 확정수입

제68조제2항 중 “고지일로부터” 를 “고지일부터” 로 한다.

제69조 중 “발부하였” 을 “발급하였” 으로, “수입금 징수의 전말” 을 “수입금 징수의 경위를” 로 한다.

제70조 중 “증빙서류” 를 “증명서류” 로 한다.

제72조 중 “대하여” 를 “대해서” 로, “발행 한다” 를 “발행한다” 로 한다.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하여” 를 “대해서”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대하여는 지방세체납의 예에 의하여” 를 “대해서는 지방세체납의 예에 따라” 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기타의 수입에 대하여” 를 “그 밖의 수입에 대해서” 로 한다.

제75조제1항 본문 중 “의하여” 를 “따라” 로, “우표대체계좌” 를 “우편대체계좌” 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제2항 본문 중 “기타” 를 각각 “그 밖에” 로 한다.

제76조 중 “예산범위 내” 를 “예산범위” 로 한다.

제77조 단서 중 “의하기” 를 “따르기” 로 한다.

제78조 중 “지출원인행위액을 취소하거나” 를 “지출원인행위액을 취소하거나” 로 한다.

제80조제1항 중 “지출원인행위자로부터” 를 “지출원인행위자에게”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적정한” 을 “부적정하였을” 로 한다.

제81조의 제목 “(지출증빙서의 검사보고)” 를 “(지출증명서의 검사보고)” 로 하고, 같은 조 중 “증빙서” 를 “증명서” 로 한다.

제82조제4항 중 “증빙서” 를 “증명서” 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한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을 “제한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으로, “경리관” 을 “재무관” 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매1월분 이내” 를 “매1월분 이내” 로 한다.

제83조제1항 본문 중 “상위법령이” 를 “상위법령에서” 로, “범위 안” 을 “범위” 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의하여” 를 “따라”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 수입대체경비의 별도 계리” 를 “따른 수입대체경비의 별도 회계 처리” 로 한다.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내” 를 “범위”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범위 안” 을 “범위” 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관련경비사용” 을 “관련 경비사용” 으로, “범위 안” 을 “범위” 로 한다.

제85조제1항 중 “경우에 한하여” 를 “경우에만” 으로 한다.

제8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87조제3호 중 “기타” 를 “그 밖의” 로 한다.

제90조의 제목 “(유가증권의 권리)” 를 “(유가증권의 관리)” 로 한다.

제94조제1호 중 “재무 상태표” 를 각각 “재무상태표” 로, “재무상태표를 합산한 재무 상태표” 를 “재무상태표를 합산한 재무상태표”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의하여” 를 “따라” 로,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로, “재무 상태표에서 제외” 를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해” 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고정자산, 유동부채”를 “고정자산, 유동부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의함을 원칙으로”를 “따름을 원칙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혼돈하여 표시하여”를 “혼돈하여 표시해”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배분하여 처리하기”를 “배분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제95조제1항 단서 중 “의하여”를 “따라”로,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관계법령이”를 “관계법령에서”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호의 1”을 “호의 어느 하나”로, “완성전이라”를 “완성 전이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호 내지 제5호”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아니한다”를 “아니 한다”로 한다.

제98조의 제목 “(부외자산의 및 수탁자산 등의 등재가액)”을 “(부외자산 및 수탁자산 등의 등재가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등제”를 “등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재생후”를 “재생 후”로 한다.

제99조제2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100조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01조제1항제2호 중 “기타예금”을 “그 밖의 예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수익중”을 “수익 중”으로 한다.

제102조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03조제2항 중 “의하여야”를 “따라야”로 한다.

제10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구매에 의한”을 “구매에 따른”으로, “제부대비”를 “모든

부대비” 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호” 를 “ 제1호” 로, “의한다” 를 “따른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 을 “따른” 으로, “대하여” 를 “대해서” 로, “기타 제비용” 을 “그 밖의 모든 비용”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의한” 을 “따른” 으로 한다.

제108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110조제2호 중 “기타” 를 “그 밖”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구축물 : 선거” 를 “구축물 : 선거” 로, “기타” 를 “그 밖의” 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계장치 : 기계장치” 를 “ 기계장치 : 기계장치” 로, “기타” 를 “그 밖”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 중 “기타” 를 각각 “그 밖” 으로 한다.

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에 의한다” 를 “각 호에 따른다”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의한” 을 “따른” 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의한” 을 “따른” 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교환에 의하여” 를 “ 교환에 따라”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의한” 을 “따른” 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를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로 한다.

제1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고정자산의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7조 전단 중 “언어야” 를 “받아야” 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변경하는 때” 를 “변경하는 경우” 로 한다.

제1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그 밖의 부속서류

제121조제1항 중 “증빙서” 를 “증명서” 로, “의하여” 를 “따라”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증빙서류” 를 “증명서류” 로 한다.

제122조제2항 중 “토지, 전신전화가입권” 을 “토지” 로 한다.

제123조제1항 중 “대하여” 를 “대해서” 로 한다.

제125조제1항 중 “공기업법 및 법인세법 등” 을 “「지방공기업법」 및 「법인세법」 등” 으로, “의한다” 를 “따른다” 로 한다.

제128조 본문 중 “변경후” 를 “변경 후” 로, “의하여” 를 “따라” 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의하여” 를 “따라” 로 한다.

제129조 중 “정도 기타” 를 “정도, 그 밖에” 로, “경우에는 법인세법” 을 “경우에는 「법인세법」” 으로 한다.

제130조 제목 중 (매도계약 체결후의 상각)을 (매도계약 체결 후의 상각)으로, 내용 중 “대하여” 를 “대해서” 로 한다.

제131조 단서 중 “아니한다” 를 “아니 한다” 로 한다.

제133조 중 “사항은 법인세법이” 를 “사항은 「법인세법」에서” 로, “의한다” 를 “따른다” 로 한다.

제134조제2호 중 “개업비 : 회사설립일로부터” 를 “ 개업비 : 회사설립일부터” 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임시손실 : 재해 및 기타” 를 “ 임시손실 : 재해 및 그 밖” 으로, “5이상인” 을 “5 이상인” 으로 한다.

제137조제4호 중 “상환된” 을 “상환될” 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선 수금 : 수주” 를 “ 선 수 금 : 수주” 로, “기타” 를 “그 밖에” 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제예수액” 을 “모든 예수액” 으로 한다.

제13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모든 수익” 을 “ 모든 수익”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를 “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따라” 로, “제외하여” 를 “제외해” 로 한다.

제143조 중 “영업외수익을 가산하고 영업외비용” 을 “영업외 수익을 가산하고 영업외 비용” 으로 한다.

제1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4조(영업외 수익) 영업외 수익은 수입이자와 유가증권처분이익, 외화평가 이익, 환율조정차익, 그 밖의 영업외 수익으로 분류하여 계상한다.

제145조의 제목 “(영업외비용)” 을 “(영업외 비용)” 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영업외비용” 을 “영업외 비용” 으로, “기타의 영업외비용으로” 를 “그 밖의 영업외 비용으로” 로 한다.

제146조 중 “기타” 를 “그 밖” 으로, 제147조 중 “기타” 를 “그 밖” 으로 한다.

제148조 중 “특별 이익” 을 “특별이익” 으로 한다.

제1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 를 “따라” 로,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및 동시행규칙에” 를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로, “의한다” 를 “따른다” 로 한다.

제15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 를 “따라” 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1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3조(결산지침) 결산은 매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결산지침에 따른다.

제156조제1항 중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으로, “얻어야” 를 “받아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결산 결과를” 을 “결산지침에 따른 결산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로, “얻어야” 를 “받아야” 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57조 중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정관과 법인세법의” 를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결산지침과 「법인세법」에서” 로, “의한다” 를 “따른다” 로 한다.

제162조 중 “대하여” 를 “대해서” 로 한다.

제163조 중 “하여” 를 “해” 로 한다.

제164조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대하여” 를 “대해서” 로 한다.

제165조 중 “얻어” 를 “받아” 로 한다.

제166조제1항 중 “의하여” 를 “따라” 로, “제장부” 를 “모든 장부” 로 한다.

제167조제1항 본문 중 “작성하여” 를 “작성해”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정된 기업회계 기준” 을 “인정된 「기업회계기준」 ” 으로 한다.

제16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매사업년” 을 “매 사업연” 으로, “의한다” 를 “따른다” 로 한다.

제169조제2항 중 “의하여 보존하고도 부족한” 을 “따라 보존하고도 부족하였을” 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구청장 승인 일부더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기업법 (이하 “공기업법”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거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재무 및 회계에 관한 운영절차와 적정한 회계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규정은 「지방공기업법」과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 -- 운영 절차와 적정한 회계 절차-- -----.</p>
<p>제2조(적용범위) ① 공단의 회계처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②어린이집의 재무회계처리는 「보육시설 재무 회계규칙」을 준용하되, 그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도별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사업 지침을 적용한다.</p>	<p>제2조(적용범위) ①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법령에서 ---- 이 규정에서 ----- 따른다.</p> <p>② ----- 재무회계처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지침」-----.</p>
<p>제3조(회계연도) 공단의 회계연도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일반회계 연도에 의한다.</p>	<p>제3조(회계연도) ----- ----- ----- 따른다.</p>
<p>제7조(회계관계업무의 위임) ① (생략)</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위임은 그 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같음</p>	<p>제7조(회계관계업무의 위임) ① (현행과 같음)</p> <p>② ----- 따른 ----- -----</p>

할 수 있다.

제8조(회계담당) ① 회계에 관한 독립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회계단위별로 다음의 회계담당을 둘 수 있다.

- 1. 2. (생략)
- 3. 계약, 기타의 지출원인행위를 담당하는 지출원인담당 또는 계약을 담당하는 계약담당
- 4. 5. (생략)
- 6. 재고자산, 고정자산 및 물품 기타 자산을 관리하는 각 자산관리 담당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담당은 대리, 분임 또는 분임 대리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 제1호와 제2호 및 제2호와 3호의 회계담당은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정원의 과소 등으로 겸직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생략)

제9조(채권, 채무의 소멸시기) 채권, 채무의 회계처리상 소멸 시기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소멸 시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회계서류의 보관) 회계서류의

-----.

제8조(회계담당) ① -----

-.

- 1. 2. (현행과 같음)
- 3. ----- 그 밖-----

- 4. 5. (현행과 같음)
- 6. -----

물품, 그 밖의 자산-----

② ----- 따름 -----

-----.

③ 제1항제1호-----
제3호-----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채권, 채무의 소멸시기) -----

----- 법령에서 ----- 따름-----
-----.

제10조(회계서류의 보관) -----

보관, 열람, 보존, 편철, 대출 및 복사는 문서규정이 정하는 바에 준한다.

----- 복사는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문서규정」에서 -- 따른다.

제11조(회계관계 직원의 책임 등) ① 회계관계 직원은 법령 기타 관계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분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관계 직원의 책임 등) ① ----- 법령, 그 밖에 관계규정에서 -----
-----.

② 회계관계 직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 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 ----- 따른다.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2조(거래의 처리) 모든 거래는 전표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한다.

제12조(거래의 처리) ----- 따라-----.

제13조(계정과목) ①·② (생략)

제13조(계정과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계정과목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및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계정과목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이하 “결산지침”이라 한다) 및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계산의 원칙) 제 계산은 다음 각호의 원칙에 의한다.

제14조(계산의 원칙) 모든----- 각 호의 원칙에 따른다.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손익계산은 포괄주의에 의한다. 다만, 당기의 경영성과를 명백히 하

3. ----- 따른다. -----

기 위하여 당 기업주의에 의거 경
상손익을 구분 계산하여야 한다.

4. 자산가액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취득가액에 의한다.

제14조의2(환불처리) ① 공단의 환불
처리는 환불요청 접수일로부터 1주
일 이내(근무일 기준)으로 처리한다.
② ①항에 대한 환불지급은 환불절
차에 따라 경리관의 승인 후 공단 회
계규정시행내규에 근거하여 집행 처
리한다.

제16조(총액계상) ① 비용과 수익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하여야 하며, 비
용항목과 수익항목을 직접 상계함으
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상태
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자산, 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
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을 상
계함으로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
무상태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
다.

제17조(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

-----당기업적주의에 따라 --
-----.

4. -----
----- 따른다.

제14조의2(환불처리) ①-----
-----1주
일 이내(근무일 기준)로 -----.
② 제1항-----
-- 재무관의 승인 후 「서울특별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회계규정 시행
내규」 (이하 “내규”라 한다)에 따라
-.

제16조(총액계상) ① -----

----- 제외해-----.
② -----따라-
----- 상계함
으로써 -----
----- 제외해-----.

제17조(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 -----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한다.

제18조(재해 및 기타의 임시 손실) 재해 및 기타의 임시손실은 그 기준을 정하여 영업외 비용 또는 특별손실로 처리한다. 다만, 재해 및 기타의 임시손실이 미처분이익 잉여금으로 보전할 수 없거나 자산총액의 1,000분의 5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5년이내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제19조(본 지점 계정) 본사(본부)와 지점(사업소)상호간의 거래는 본 지점 계정으로 처리한다.

제21조(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 또는 기타의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2. (생략)
3. 상환의무가 없는 수익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 주된 영업활동과의 관련성에 따라 영업수익 또는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며, 특정비용을 보전할 목적인 경우 특정비용과 상계한다. 단, 특정조건을 충족하기 전에는 선수수익으로 계상한다.
4. (생략)

-----.

제18조(재해 및 그 밖의 임시 손실) -----
----- 그 밖-----

----- 그 밖-----

----- 5 이상인 -----

----- 5년 이내 -----
-----.

제19조(본 지점 계정) -----
-- 지점(사업소) 상호간-----
-----.

제21조(국고보조금) -----
---- 그 밖-----

-.

1. 2. (현행과 같음)
3. -----

----- 영업외 수익-----

-----.
4. (현행과 같음)

제23조(전표의 대용) 결의서 또는 증빙서는 전표로 대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결의서 및 증빙서의 서식에는 전표의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4조(전표의 기준) ① (생략)
② 한장의 전표는 한 계정과목에 대하여서 기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25조(전표금액의 정정) 전표의 합계 금액은 이를 정정하지 못하며, 기타 기재사항의 오기를 정정할 때에는 반드시 책임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제26조(전표의 심사) 전표에 의하여 총 계정원장에 전기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불미한 점이 있을 때에는 보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기타 전표 작성상 불미한 사항

제28조(기재원칙) ① (생략)

②잔액의 대차구분을 요하는 때에는 이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③오기의 정정은 정당한 정정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④정규란 이외의 기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장부의 마감요령) 회계장부의

제23조(전표의 대용) -----
증명서-----
----- 증명서-----
-----.

제24조(전표의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한 장의 전표에는 한 계정과목을-----.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전표금액의 정정) -----
----- 그 밖에 -----
-----.

제26조(전표의 심사) ----- 따라-----

----- 각 호----- 미비-----
-----.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 미비-----

제28조(기재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 -----대차구분이 필요한 경우-----
-----.

③ -----
----- 따라야 -----.

④ ----- 이외에 기입을 해-----
-----.

제29조(장부의 마감요령) -----

마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사용한다.

1. (생략)
2. 총 계정원장, 각 계정원장 기타 명세장은 매월 말에 마감한다.
- 3.·4. (생략)

제31조(장부의 이월) 회계연도 말에 있어서의 재무상태표 계정의 제잔액은 다음연도 1월1일부로 신장부에 이월하되, 미결산 계정에 관하여는 그 명세를 이기하여야 한다. 다만, 그 양이 많은 경우에는 일괄하여 이월하고 신·구 장부를 같이 비치하여야 한다.

제4절 증빙서

제33조(증빙서류의 범위)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원본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하고 대조자가 이에 확인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34조(증빙서류 생략) 오기정정 또는 결산 시 계정간대체 등과 같이 단순히 계산적조작의 필요에 의하여 발생한 준거래에 있어서는 그 전표로서 증빙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전표의 적요란에 사유 및 산출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5조(증빙서류의 작성) 증빙서류는

----- 각 호-----.

1. (현행과 같음)
2. ----- 계정원장, 그 밖의 -----.
- 3.·4. (현행과 같음)

제31조(장부의 이월) -----
----- 모든 잔액은
다음연도 1월 1일부-----

----- 신구-----
-----.

제4절 증명서

제33조(증명서류의 범위) 증명서류-----
-----.
----- 따르기 -----

-----.

제34조(증명서류 생략) -----

----- 계산적 조작의 필요에 따라-----
----- 전표로
써 증명서류-----
-----.
-----.

제35조(증명서류의 작성) 증명서류--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지출결의서

가. (생략)

나. 적요란에는 지급의 뜻, 공사명, 품명 및 수량, 산출내역, 부분급 내용과 지급회수, 선급금 및 개산금의 표시 등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다. (생략)

2. 영수증서

가. 정당한 채권자가 지출결의서의 영수란에 기명 날인하거나 합계금액의 정정이 없는 별지 영수증서(입금표 포함)에 기명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3. 청구서

가. 청구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하며, 그 명세는 계약서 등 다른 관계 서류의 명세와 일치하여야 한다.

4. 계약서

가. (생략)

나. 계약서와 그 부속서류는 그 내용이 서로 부합되어야 한다.

5. 기타 증빙서류

가. 급여대장, 인부사역부 등 지출

----- 따라-----

1. -----

가. (현행과 같음)

나. 적요란-----

-----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

다. (현행과 같음)

2. 영수증서는 정당한 채권자가 지출결의서의 영수란에 기명 날인하거나 합계금액의 정정이 없는 별지 영수증서(입금표 포함)에 기명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3. 청구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하며, 그 명세는 계약서 등 다른 관계 서류의 명세와 일치하여야 한다.

4. -----

가. (현행과 같음)

나.-----
----- 일치되어야 -----.

5. 그 밖의 증명서류

가. -----

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의 여백에 그 내용을 주기해야 한다.

나. 기타 증빙서류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계관행에 따른다.

제40조(예산의 이월) 예산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자본예산과 손익예산의 사업예산 중 지출원인행위를 한 공사비와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예산총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 사용할 수 있다.

제41조(예산편성지침) 예산관리자는 예산편성지침을 기준으로 자체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부문 예산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예산요구서의 제출 및 예산안 제출) ① 부문 예산관리자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소관 소요예산 요구서를 작성하여 소정기일 내에 예산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관리자는 각 부문별 예산요구서를 종합 사정하여 예산안을 편성한 후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

-----증명서류를-----

-----.

나. 그 밖에 증명서류의-----

--.

제40조(예산의 이월) -----

-----.

----- 예산총칙에서 -----
-----.

제41조(예산편성지침) 예산관리자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및 구청장이 정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

제42조(예산요구서의 제출 및 예산안 제출) ① -----
----- 따라 -----
-----.

② -----

----- 후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

하여야 한다.

제43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예산안의
첨부서류는 예산편성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4조(예산의 성립) ① (생략)
② 제1항에 의한 예산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예산관리자는 지체없이 이를
부문 예산 관리자에게 부문별 예산
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예비비) ① (생략)
② 예비비는 사업별로 계상하며 예비
비를 사용코자 할 때에는 사용계획
서를 작성하여 예산총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한다.

제47조(추가경정예산) ① 예산이 성립
된 후의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
을 변경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
가경정예산을 편성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48조(예산 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
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
계연도 개시 전까지 성립되지 아니
할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예산안에
계상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경우
에는 전년도 실적범위 내에서 집행
할 수 있다.

례」에서 -.

제43조(예산안의 첨부서류) -----
----- 예산편성지침에서
----- 따른다.

제44조(예산의 성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따른 -----

----- 관리자에게-----
-----.

제46조(예비비) ① (현행과 같음)
② -----

----- 예산총칙에서 -----
-----.

제47조(추가경정예산) ① -----
----- 그 밖에 --

----- 변경할-----
----- 편성할-----.

② (현행과 같음)

제48조(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집행)
① -----

----- 각 호-----
----- 실적범위-----
-----.

1. ~ 3. (생략)

② 제1항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54조(구매 및 계약체결) ① (생략)

② 전항의 요구는 검토기간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일자로부터 3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구매 시에는 조사자와 담당팀장이 각각 서명 날인한 가격산출조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조, 수리를 요하는 계약체결 시에는 시방서, 설계도면, 원가내역서 등의 기초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55조(계약심사) ① (생략)

② 전항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유사품목·업종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어도 2개업체 이상에 대하여 가격, 성능, 이용편이도, 유지보수의 용이도 등을 비교 검토한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56조(결과통보) 경영기획실은 계약

1. ~ 3. (현행과 같음)

② ----- 따라-----
----- 따라 -----.

제54조(구매 및 계약체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 계약체결일자부터-----
-----.

③ (현행과 같음)

④ -----
----- 필요로 하는 -----
-----.

⑤ (현행과 같음)

제55조(계약심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 2개 업체 -----
-----.

③ (현행과 같음)

제56조(결과통보) -----

심사결과를 해당 부서에 통보한다.

제57조(지방계약법 준용) 구매 및 계약사무에 관하여는 이 규정 및 내규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을 준용한다.

제58조(금전의 범위) ① (생략)

②당일로 현금화할 수 있는 어음과 기타 유가증권 등 제증서도 금전에 준하여 취급한다.

제63조(금전의 과부족처리) ① 금전의 부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금액을 가지급으로 처리하고 그 경위를 조사하여 이사장과 감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가지급 처리 후 1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때에는 취급자가 즉시 변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제3항의 가수금 처리 후 3월이 경과하여도 그 내용이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한다.

⑤ (생략)

제64조(수표 및 어음행위) ① 수표 또는 어음발행은 이사장의 명의로 한

계약심사 결과-----.

제57조(지방계약법 준용) -----
----- 내규에서
-----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금전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
---- 그 밖의 ----- 모든 증-----.

제63조(금전의 과부족처리) ① -----

---- 가지급금-----

-----.

② ----- 가지급금 -----
----- 못하였을 -----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아니하였을 -----

-----.

⑤ (현행과 같음)

제64조(수표 및 어음행위) ① -----

다. 다만, 이사장이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명의로 행할 수 있다.

② (생략)

제65조(자금의 차입 등) 자금의 차입, 상환, 대여 및 투자와 지급보증행위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의 명의로 행한다.

제67조(수입금의 징수) ① 수입금을 징수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입결의서에 의하여야 하며 납입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납할 수 있다.

1. ~ 5. (생략)

6. 기타 관계법령 및 계약 등에 의한 확정수입

제68조(납입고지의 기한) ① (생략)

② 납입고지서의 납입기한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③ (생략)

제69조(장부정리) 수입금을 징수결정하고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였을 때에는 수입금 징수부에 기재하여 수입

----- 할 -----
-----.

② (현행과 같음)

제65조(자금의 차입 등) -----

----- 한다.

제67조(수입금의 징수) ① -----

----- 따라야 -----
----- 발급하여야 -----.

② -----
----- 따르지 -----
-----.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관계법령 및 계약 등에 따른 확정수입

제68조(납입고지의 기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 고지일로부터 -----.

③ (현행과 같음)

제69조(장부정리) -----
----- 발급하였 -----
----- 수입

금 징수의 전말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70조(납입영수증 보관) 수입금이 납입되었을 때에는 일계표, 납입고지서원본, 납입영수증서, 거래점과의 대조확인서 등을 증빙서류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2조(납입의 독촉) 납입기한이 경과하여도 납입하지 아니하는 납입의무자에 대하여는 납기경과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행 한다.

제73조(불납한 경우의 처리) 불납한 내용을 조사한 결과 납입의 가망이 없거나 납입을 태만히 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감사부서 변상 판정문에 대하여는 지방세체납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

2. 기타의 수입에 대하여는 체납자 또는 채정보증인의 재산상황 등을 조사하여 제소 등의 절차를 취한다.

3. (생략)

제75조(금전지출의 원칙) ① 지출은 수표 및 현금에 의하여 수취인 별로 채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또는 체신관서의 우표대체계좌

금 징수의 경위를-----.

제70조(납입영수증 보관) -----

----- 증빙서류 -----
-----.

제72조(납입의 독촉) -----

----- 대해서 -----
----- 발행한다.

제73조(불납한 경우의 처리) -----

----- 대해서 -----
-----.

1. -----
-- 대해서는 지방세체납의 예에 따라-----.

2. 그 밖의 수입에 대해서-----

-----.

3. (현행과 같음)

제75조(금전지출의 원칙) ① -----
----- 따라 -----

----- 우표대체계좌-----

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도금지급, 소액지급, 급여, 여비와 기타 특별한 경비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인건비, 여비 또는 기관 상용의 경비, 기타 소액의 경비는 수표로 일괄하여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영수증서는 수취인별로 받아야 한다.

제76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 지출원인행위는 예산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77조(지출원인행위의 결의서 작성)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출결의서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내부결재 문서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78조(지출원인행위의 증감, 취소) 지출원인 행위자는 계약의 해제, 계약금액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지출원인행위액을 취소하거나 증감하고자 할 때에는 당초의 지출원인행위 취소결의서 또는 지출원인행위 증감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0조(지출원인행위 서류의 심사) ① 지출담당은 지출원인행위자로부터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받았을 때

--그 밖에-----
-----.

② -----
---- 그 밖에 -----

-----.

제76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 -----
----- 예산범위-----
-----.

제77조(지출원인행위의 결의서 작성) -----
-----.
----- 따르기 -----
-----.

제78조(지출원인행위의 증감, 취소) -

----- 지출원인행위액을 취소하거나-----

-----.

제80조(지출원인행위 서류의 심사) ① -----
-----지출원인행위자에게-----

에는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사결과 부적정한 때에는 관계서류를 지출원인행위자에 반송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81조(지출증빙서의 검사보고) 책임자는 지출업무의 적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지출에 관한 증빙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2조(일상경비의 교부) ① ~ ③ (생략)

④ 일상경비취급담당자는 익월 10일까지 일상경비 정산보고서를 관계 증빙서와 같이 지출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일상경비의 범위와 제한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경리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일상경비는 매1월분 이내 금액을 예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83조(수입대체경비의 직접사용) ① 용역 및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로서 상위법령이 정한사항에 대해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 안에서 직접 지출할 수 있다. 다만,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

-----.

② ----- 부적정
하였을 -----
-----.

제81조(지출증명서의 검사보고) -----

----- 증명서
-----.

제82조(일상경비의 교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증명서-----
-----.

⑤ ----- 제한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 재무관-----
-----.

⑥ ----- 매1월분 이내 --
-----.

제83조(수입대체경비의 직접사용) ①

----- 상위법령에서 --

----- 범위-----
-----.

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수입을 상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②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대체경비의 별도 계리를 위하여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을 따로 임명할 수 있다.

제84조(수입대체경비의 범위) 수입대체경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상위법령에서 제한한 범위내에서 이사가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생략)
2. 수입의 범위 안에서 관련경비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관련경비사용을 별도 규정하고 있거나, 수입을 수반하는 실험·실습·연구비에 있어서 그 비용을 그 수입의 범위 안에서 지출하는 경우

제85조(선급금과 개산금의 지급) ① 지출담당은 업무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선급금 또는 개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략)

- 따라-----

-----.

② -----따른 수입대체경비의 별도 회계처리-----

-----.

제84조(수입대체경비의 범위) -----

----- 범위-----
-----.

1. (현행과 같음)
2. ----- 범위-----

3. ----- 관련 경비 사용-----
----- 범위-----

제85조(선급금과 개산금의 지급) ① -----

----- 경우에만-----
-----.

② (현행과 같음)

제86조(선급금의 지급범위) 선급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2. (생략)
- 3. 기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경비

제87조(개산금의 지급범위) 개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2. (생략)
- 3. 기타 기준을 정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경비

제90조(유가증권의 권리) ①·② (생략)

제94조(재무상태표의 작성기준) 재무상태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1. 원칙적으로 전입금별로 작성하며, 공시용 재무상태표는 각 전입금별 재무상태표를 합산한 재무상태표로 작성표시 한다.
- 2. 자산, 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 3.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

제86조(선급금의 지급범위) -----

----- 각 호-----.

- 1. 2. (현행과 같음)
- 3. 그 밖에 -----

제87조(개산금의 지급범위) -----

-----.

- 1. 2. (현행과 같음)
- 3. 그 밖의 -----

제90조(유가증권의 권리) ①·② (현행과 같음)

제94조(재무상태표의 작성기준) -----

-----.

- 1. -----
----- 재무상태표-----
----- 재무상태표를 합산한 재무상태표-----.
- 2. ----- 따
라-----
-----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 재무상태표에서 제외
해-----.
- 3. -----

여 유동자산 또는 투자와 기타자산, 고정자산,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재무상태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 배열은 유동성 배열법에 의함을 원칙 으로 한다.

5.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혼돈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장래의 기간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비용은 차기 이후의 기간에 배분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다.

제95조(자산의 평가기준) ① 재무상태표에 기재하는 자산의 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14조에 의하여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그 재평가액을 기초로 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② 자산의 취득원가는 자산의 종류에 상응한 원가배분의 원칙에 의하여 각 회계연도에 배분하여야 한다.

제96조(채권의 소멸시기) ① 채권의

----- 고정자산, 유동부채 -----

-----.

4. -----

----- 따름을 원칙으로 -----.

5. -----

----- 혼돈하여 표시해 -----
-----.

6. -----

----- 배분하여 처리하기 -----
-----.

제95조(자산의 평가기준) ① -----

----- 따라 -----
-----.

② -----
----- 따라 -----
-----.

제96조(채권의 소멸시기) ① -----

회계처리상 소멸시기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소멸 시효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완성전이라도 당해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 5. (생략)

6.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이 사장이 인정한 경우

②연대 채무자 또는 보증인 등 따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8조(부외자산의 및 수탁자산 등의 등재가액) ①·② (생략)

③기증, 증여 등에 의하여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 자산으로 등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정자산 또는 특정저장품에 등제한 가액은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다.

④수익적 지출에 의하여 비용 처리된 자산으로 사용 후 반납된 것은 그 상태를 감안하여 재생 후 재입고시키거나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의 가치가 있는 것은 재생 후 그 상태에 따른 평가액을 입고가액으로 할 수 있으며, 평가액에서

----- 관계법령에서 -----
----- 따른다. -----

----- 호의 어느 하나 -----
----- 완성 전이라 -----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

② -----

----- 제1호부터 제5호까지 ----- 아니 한다.

제98조(부외자산 및 수탁자산 등의 등재가액)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따라 -----

----- 등재 -----

④ ----- 따라 -----

----- 재생 후 -----

재생비용을 공제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고 이를 영업외 수익으로 계상한다.

제99조(관리기준의 제정) ① (생략)

②이사장은 자산 중 필요한 것에 대하여는 정수와 소모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0조(유동자산의 분류) 유동자산은 당좌자산, 재고자산, 기타 유동자산으로 분류 한다.

제101조(당좌자산) ① 당좌자산의 과목은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생략)
2. 예금 : 당좌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기타예금을 말한다.
3. ~ 7. (생략)
8. 미수수익 : 당기에 속하는 수익 중 미수액을 말한다.

제102조(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취득 보관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소모품, 소모공구, 기구비품, 수선용부품 및 기타 저장품으로서 상당액 이상의 것을 말한다.

제103조(재고자산의 관리) ① (생략)

②재고자산의 출납은 입, 출고 전표

-.

제99조(관리기준의 제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대해서 -----
-----.

제100조(유동자산의 분류) -----
----- 그 밖의 -----
-----.

제101조(당좌자산) ① -----
-----.

1. (현행과 같음)
2. -----
----- 그 밖의 예금 -----.
3. ~ 7. (현행과 같음)
8. ----- 수익 중 -----
-----.

제102조(재고자산) -----

----- 그 밖의 -----
-----.

제103조(재고자산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에 의하여야 한다.

제104조(재고자산의 출납기준) 재고자산의 출납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수량의 출납기록 및 계산은 계속 기록부에 의한다.
2. 가액의 출납기록 및 계산은 계속 기록부에 의한다.
3. 현품의 출납은 선입선출법에 의한다.

제105조(재고자산의 취득가액) ①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구매에 의한 것은 구매가격에다 구매에 수반하여 발생한 제부대비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부대비를 직접 가산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따로 항목을 결정하여 일괄 처리할 수 있다.
2. (생략)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중고품 또는 불용품으로 대체하는 경우와 무상 취득 자산은 정당히 평가된 가격 또는 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 중 외자로 도입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대금에 관세, 보험료, 운임, 하역비, 구

----- 따라야-----.

제104조(재고자산의 출납기준) -----
----- 따른다.

1. -----
----- 따른다.
2. -----
----- 따른다.
3. -----
따른다.

제105조(재고자산의 취득가액) ① ---

----- 따른다.

1. 구매에 따른 -----
----- 모든 부대비-----

-----.
2. (현행과 같음)
3. 제1호 -----

----- 따른다.

② ----- 따른 -----
----- 대해서-----

매수수료 및 기타 제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재무상태표 가액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가액이 현저하게 폭락하여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가로 한다.

제108조(투자자산의 분류) 투자자산의 과목은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 4. (생략)
5. 전신전화 가입권 : 특정한 전신 또는 전화를 소유, 사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6. ~ 8. (생략)

제110조(유형고정자산의 범위) 유형고정자산의 범위와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건물 : 건물과 냉난방, 조명, 통풍 및 기타의 건물 부속설비 등으로 한다.
3. 구축물 : 선거, 교량, 암벽, 부교, 제도, 저수지, 갯도, 굴뚝, 정원설비 및 기타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등으로 한다.
4. 기계장치 : 기계장치, 운송설비(컨베이어, 호이스트, 기중기)와 기타

----- 그 밖의 모든 비용
-----.

③ -----
----- 따른 -----
-----.
-----.

제108조(투자자산의 분류) -----
-----.

1. ~ 4. (현행과 같음)
- <삭 제>

6. ~ 8. (현행과 같음)

제110조(유형고정자산의 범위) -----
-----.

1. (현행과 같음)
2. -----
----- 그 밖 -----
-----.

3. 구축물 : 선거-----

----- 그 밖의 -----
-----.

4. 기계장치 : 기계장치-----
----- 그 밖

의 부속설비로 한다.

5. 선박 : 선박과 기타의 수상운반구로 한다.

6. 차량운반구 : 철도차량, 자동차 및 기타의 육상 운반구 등으로 한다.

7.·8. (생략)

제114조(고정자산의 취득가액) ①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구입에 의한 것은 구입가격에 부대비 및 설치비를 가산한 금액

2. 공사 또는 제작에 의한 것은 그 원가 및 설치비를 가산한 금액

3. (생략)

4. 교환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장부가액에 교환자금 및 부대비를 가감한 금액

② 재무상태표 가액은 제1항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한다.

제116조(자산재평가) ① 고정자산의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5. ----- 그 밖-----
-----.

6. -----
그 밖-----.

7.·8. (현행과 같음)

제114조(고정자산의 취득가액) ① -----
----- 각 호에
따른다.

1. ----- 따른 -----

2. ----- 따른 -----

3. (현행과 같음)

4. 교환에 따라-----

② ----- 따른
----- .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
-----.

제116조(자산재평가) ① 고정자산의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생략)

제117조(임대차) 고정자산을 임대차 하고자 하는 경우에 중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19조(장부 및 부속서류) 고정자산에 관한 장부 및 부속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 4. (생략)
- 5. 기타 부속서류

제121조(고정자산의 관리) ① 유형 고정자산을 취득 및 처분할 때에는 고정자산 담당부서의 장은 관계 증빙서가 첨부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산취득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고정자산 담당자는 고정자산 대장 및 관계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항상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122조(감가상각의 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의 비상각자산은 토지, 전신전화가입권, 건설 중의 자산, 투자자산, 임목 등을 말하며 대치자산의 범

② (현행과 같음)

제117조(임대차) -----

----- 받아야 -----.
----- 변경하는 경우-----.

제119조(장부 및 부속서류) -----

----- 각 호-----.

- 1. ~ 4. (현행과 같음)
- 5. 그 밖의 부속서류

제121조(고정자산의 관리) ① -----

----- 증명서-----

----- 따라-----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증명서류-----
-----.

④ (현행과 같음)

제122조(감가상각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토지-----

위는 따로 정한다.

제123조(감가상각방법) ① 감가상각방법은 유형자산에 대하여는 정률법 또는 정액법 중 하나의 방법만을 적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무형자산은 정액법을 적용한다.

② (생략)

제125조(내용연수) ①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기준은 공기업법 및 법인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②·③ (생략)

제128조(장부가액 변경시의 상각) 수리비의 산입, 평가, 증감 등으로 인하여 자산의 장부가액 또는 내용연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후의 장부가액 또는 내용연수에 의하여 감가상각한다. 다만, 수리비의 산입에 의하여 내용연수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사업계획서에 이를 결정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제129조(특별상각 및 상각의 이연)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이용량, 진부화의 정도 기타 경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에서 정한 범위를 준용

-.

제123조(감가상각방법) ① -----
----- 대해서

-----.

② (현행과 같음)

제125조(내용연수) ① -----
-- 「지방공기업법」 및 「법인세법」
등 ----- 따른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8조(장부가액 변경시의 상각) ---

----- 변경 후---
----- 따라---

-----.

제129조(특별상각 및 상각의 이연) --

- 정도, 그 밖에 ----- 경우에
는 「법인세법」-----

하여 특별상각의 이연을 할 수 있다.

제130조(매도계약 체결후의 상각) 매도계약을 체결한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1조(장기 운휴자산의 상각) 장기간 운휴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운휴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3조(법인세법의 준용) 이 규정에서 감가상각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4조(이연자산의 범위) 이연자산의 과목은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생략)
2. 개업비 : 회사설립일로부터 영업개시일까지 발생한 개업준비를 위한 비용 등을 말한다.
3. (생략)
4. 임시손실 : 재해 및 기타의 임시손실액이 미처분잉여금으로 보전할 수 없거나 자산총액의 10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137조(유동부채의 범위) 유동부채의 과목은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 3. (생략)

-----.

제130조(매도계약 체결 후의 상각) ----- 대해서-----.

제131조(장기 운휴자산의 상각) -----

----- 아니 한다.

제133조(법인세법의 준용) -----

----- 사항은 「법인세법」에서 -----
----- 따른다.

제134조(이연자산의 범위) -----
-----.

1. (현행과 같음)
2. 개업비 : 회사설립일부터-----
-----.
3. (현행과 같음)
4. 임시손실 : 재해 및 그 밖-----

----- 5 이상인 -----.

제137조(유동부채의 범위) -----
-----.

1. ~ 3. (현행과 같음)

4. 단기 차입금 : 1년 이내에 상환될
차입금으로 한다.

5. (생략)

6. 선수금 : 수주 공사, 수주품 및
기타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선수액으로 한다.

7. 예수금 : 일반적 상거래 이외
에서 발생한 일시적 제예수액으로
한다.

8. ~ 14. (생략)

제139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손익계
산서는 다음 각호에 따라 작성하여
야 한다.

1. (생략)

2.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
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
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
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서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생략)

4.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
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생략)

4. ----- 상환될
-----.

5. (현행과 같음)

6. 선수금 : 수주 -----
----- 그 밖에 -----
-----.

7. -----
----- 모든 예수액-----
-----.

8. ~ 14. (현행과 같음)

제139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
----- 각 호-----
-----.

1. (현행과 같음)

2. 모든 수익-----

-----.

-----.

3. (현행과 같음)

4.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따라-- --

제외해-----.

5. (현행과 같음)

제143조(경상손익계산) 경상손익은 영업손익에 영업외수익을 가산하고 영업외비용을 차감하여 표시한다.

제144조(영업외수익) 영업외수익은 수입이자와 유가증권처분이익, 외화평가이익, 환율조정차익, 기타의 영업외수익으로 분류하여 계상한다.

제145조(영업외비용) 영업외비용은 지급이자, 사채이자, 유가증권처분손실, 유가증권평가손실, 외환차손, 외환평가손실, 기타의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하여 계상한다.

제146조(특별이익) 특별이익은 경상손익이외의 임시적 이익으로서 투자자산 처분이익, 고정자산처분이익, 상각채권추심이익, 자산수증이익 및 기타의 특별이익으로 분류하여 계상한다.

제147조(특별손실) 특별손실은 경상손익 이외의 임시적 손실로서 투자자산처분손실, 고정자산처분손실, 재해손실 및 기타의 특별손실로 분류하여 계상한다.

제148조(법인세 차감전 순손익) 법인세 차감 전 순손익은 경상손익에 특별 이익을 가산하고 특별손실을 차감하여 표시한다.

제143조(경상손익계산) -----
----- 영업외 수익을 가산하고 영업외 비용-----.

제144조(영업외 수익) 영업외 수익은 수입이자와 유가증권처분이익, 외화평가이익, 환율조정차익, 그 밖의 영업외 수익으로 분류하여 계상한다.

제145조(영업외 비용) 영업외 비용-----

----- 그 밖의 영업외 비용으로-----.

제146조(특별이익) -----

----- 그 밖-----
-----.

제147조(특별손실) -----

----- 그 밖-----
-----.

제148조(법인세 차감전 순손익) ----

----- 특별이익-----
-----.

제150조(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기준) ① 고정자산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수익적 지출로 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및 동시행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51조(공통비용의 배분) 공단에서 발생하는 공통비용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배분할 수 있다.

1.·2. (생략)

3.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준

제153조(결산지침) ① 결산 총괄책임자는 결산일 15일전 결산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결산지침을 작성시달한다.

② 제1항의 결산지침에는 다음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회계단위별 결산 일정
2. 결산에 관한 기준과 원칙
3. 결산정리에 관련된 사항
4. 결산에 관한 제규정의 준수사항
5. 경영분석자료

제150조(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기준) ① -----
--- 각 호-----.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따라-----
-----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
----- 따른다.

제151조(공통비용의 배분) -----

----- 따라-----
-----.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

제153조(결산지침) 결산은 매년 행정
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결산지침에 따
른다.

6. 기타 결산에 필요한 사항

제156조(결산승인) ①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결산이 확정된 때에는 결산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결산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1. 사업계획 대비 실적 분석보고서
- 2.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 3. 예비비 사용 및 예산전용의 금액과 이유를 명시한 조서
- 4.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함을 필요한 서류

제157조(결산서의 비치, 공시, 및 공고) 결산 서류의 비치, 공시 및 공고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정관과 법인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2조(불확정채권, 채무의 정리) 불확정채권은 귀속의 사유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계상하지 아니하고 불확정채무에 대하여는 면책의 사유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계상되어야 한다.

제163조(퇴직급여충당금과 특별수선

제156조(결산승인)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

----- 받아야 -----.

② ----- 결산서에 결산지침에 따른 결산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 받아야 -----.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제157조(결산서의 비치, 공시, 및 공고) -----
-----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결산지침과 「법인세법」에서 -- 따른다.

제162조(불확정채권, 채무의 정리) --

----- 대해서-----
-----.

제163조(퇴직급여충당금과 특별수선

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과 특별수선
충당금은 결산일 현재 실질적으로
발생하거나 소요될 총액으로 하며
그 계산의 기준과 절차를 달리 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164조(대손충당금) 대여금, 미수금,
기타 이에 준하는 정상적인 영업거
래에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는 장
부가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1에 상
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대손충
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제165조(결손처리) 결산정리에 따라
결손처리 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하
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 승인을 얻어
비용 또는 특별손실로 계상한다.

제166조(장부의 마감 및 이월) ① 결산
정리 후의 총계정 원장에 의하여 시
산표를 작성하고 제장부를 마감한
다.

② (생략)

제167조(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①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
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
손금 처리계산서와 재무상태 변동표
로 하되 용도에 따라 다른 내용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
다. 다만,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불

충당금) -----

-----해-----
-----.

제164조(대손충당금) -----
----- 그 밖에 -----
----- 대해서 -----

-----.

제165조(결손처리) -----

----- 받아 -----
-----.

제166조(장부의 마감 및 이월) ① ---
----- 따라 -----
----- 모든 장부 -----
-----.

② (현행과 같음)

제167조(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①

----- 작성해 -----
-----.

가피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재무제표를 작성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무제표 작성은 본 규정 및 결산지침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한다.

③ (생략)

제168조(잉여금의 처리) 매사업년도 결산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 다만, 자본잉여금은 예외로 한다.

1. ~ 3. (생략)

제169조(결손금의 처리)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하고도 부족한 때에는 이를 다음연도에 이월한다.

-----.

② ----- 인정된 「기업회계 기준」-----.

③ (현행과 같음)

제168조(잉여금의 처리) 매 사업연도-----
----- 따른다. -----.

1. ~ 3. (현행과 같음)

제169조(결손금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따라 보존하고도 부족하였을 -----.